



진안군

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제492호 2016. 5. 16(월)

선	기 관 의 장
람	

## 조 례

- 진안군 조례 제2216호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진안군 조례 제2217호 (진안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진안군 조례 제2218호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진안군 조례 제2219호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진안군 조례 제2220호 (진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고 시

- 진안군 고시 제2016-41호 (대행자선정고시문 진안군 고시) ..... 24
- 진안군 고시 제2016-46호 (지적기준점고시문 진안군 고시) ..... 25

회											
---	--	--	--	--	--	--	--	--	--	--	--

발행 진 안 군 (편집 행정지원과)(063)430-2838

진안군의회 의결을 얻은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직무대리 부군수 이 죄



2016 5월 16일

진안군 조례 제2216호

###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난방 연료비”를 “냉방·난방연료비, 공공요금 및 보험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간식비”를 “간식비 및 양곡구입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경로당의 신축·증축·개축 및 물품·장비 보강 사업 등 환경 개선 사업비(다만, 마을회관과 겸하여 사용하는 곳은 제외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 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① ----- ----- ----- ----- 범위에서 ----- ----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난방 연 료비	1. ----- 냉방 ·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및 보 험료
2. 경로당 시설 이용자 간식비	2. ----- 간식비 및 양곡구입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비, 단, 마을회관은 제외	4.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경로 당의 신축·증축·개축 및 물 품·장비 보강 사업 등 환경 개선 사업비(다만, 마을회관과 겹하여 사용하는 곳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진안군의회 의결을 얻은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직무대리 부군수 이근수



2016 5월 16일

진안군 조례 제2217호

###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진안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 제1항 각 호(제4호  
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상한 금액은 영 제25조제1항제5호 가목을 따른다.

제12조에 현행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공사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호선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호선하는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칙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는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
1. ~ 3. (생 략) 4. 「건설기술관리법」----- -----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기술 진흥법」----- -----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진안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2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현 행	개 정 안
<u>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	<u>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 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u>	<u>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u>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lt;신 설&gt;</u>	<u>5.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
<u>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 금액은 영 제25조 제5호에 의한다.</u>	<u>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u> ----- ----- ----- <u>이 경우, 그 상한 금액은 영 제25조제1항제5호 가목을 따른다.</u>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u>
<u>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u>	<u>10. (현행 제9호와 같음)</u>

진안군의회 의결을 얻은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직무대리 부군수 〇 | 2016. 5. 16



2016 5월 16일

진안군 조례 제2218호

###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군수가 임명하며, 진안군 감사담당이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군수가 추천하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과 진안군의회 추천을 받은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호의 인원 수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주관 부서장

2. 보건업무 주관 부서장

3.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6.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감사는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해당 기간 중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원장·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革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업계획과 예산”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를 “법 제29조제1항”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임원) ① 의료원의 임원은 이사장 1명, 6명 이상 8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u>	<u>제4조(임원) ① 의료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u>
<u>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진안군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감사는 군수가 임명하며, 진안군 감사담당이 겸임 할 수 있다.</u>	<u>② 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u>
<u>1. 예산업무 주관 부서장</u>	
<u>2. 보건업무 주관 부서장</u>	
<u>3.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2명</u>	
<u>4.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2명</u>	
<u>5.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2명</u>	
<u>③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u>	<u>③ 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u>

현 행	개 정 안
	<p>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군수가 임명하며, 진안군 감사담당이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군수가 추천하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과 진안군의회 추천을 받은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호의 인원수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산업무 주관 부서장</li> <li>2. 보건업무 주관 부서장</li> <li>3.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li> <li>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li> </ol>

현 행	개 정 안
	<u>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u>
	<u>5.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u>
	<u>6.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u>
<u>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와 감사는 위 임기의 범위에서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u>	<u>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u>
<u>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u>	<u>⑥ 감사는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u>
<u>&lt;신 설&gt;</u>	<u>제4조의2(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u> <u>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해당 기간 중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 <u>③ 원장·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퇴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u>

현 행	개 정 안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p><u>제7조(겸직 제한) 의료원에 근무</u>  <u>하는 입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u>  <u>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u>  <u>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의</u>  <u>료원의 원장이 교수의 승인을</u>  <u>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u>  <u>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u>  <u>아니하다.</u></p> <p>제9조(사업 계획과 예산) ① 원장 은 매 사업연도의 <u>사업계획과</u> <u>예산</u>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p> <p>② (생 략)</p> <p>제13조(지도·감독) ① 법 제23조 의 규정에 <u>의하여</u> 교수는 의료 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p> <p>② (생 략)</p> <p>제16조(과태료) ① 교수가 <u>법 제2</u> <u>9조</u>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 태료는 <u>다음과</u> 같다.</p> <p>1. · 2. (생 략)</p> <p>② (생 략)</p>	<p><u>&lt;삭 제&gt;</u></p> <p>제9조(사업 계획과 예산) ① ----- ----- <u>사업계획안</u> <u>과 예산안</u>----- ----- <u>교수의 승인을 받아야</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지도·감독) ① ----- ----- <u>따라</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과태료) ① ----- <u>법</u> <u>제29조 제1항</u>----- ----- <u>다음 각 호와</u>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진안군의회 의결을 얻은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직무대리 부군수 ○ | 즈



2016 5월 16일

진안군 조례 제2219호

###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생아”란 관내 가정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한 영아를 말한다.

5. “입양아”란 관내 가정에 입양된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출생아 및 입양아로서 출생아는 태어난 날  
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출산장려금의 지원액)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입양아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별로 각각 지원하되 주민등록에 등재된 순서로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1. 첫째와 둘째 출생아는 총 220만원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축하금 : 출산장려금 신청 다음 달 말까지 100만원을 지급

나. 양육지원금 : 출생 후 7개월째 되는 달 말일과 1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각각 60만원 지급(다만, 출생 후 6개월과 12개월째 되는 달에 관내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2. 셋째 출생아 이상은 총 1,000만원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축하금 : 출산장려금 신청 다음 달 말까지 300만원 지급

나. 양육지원금 : 12개월째 되는 달 말까지 300만원, 24개월째 되는 달 말까지 200만원, 36개월째 되는 달 말까지 200만원 지급(다만, 지급하는 달 현재까지 관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제2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망 또는 혼인·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행정 전산망 자료의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 받아 담당 공무원의 조회로 갈음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제2조부터 제3조까지와 및 제5조 및 제7조는 이 조례 공포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생아"란 관내에 출생 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4. "출생아"란 관내 가정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한 영아를 말한다.
<신 설>	5. "입양아"란 관내 가정에 입양된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서 출생아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 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은 출생아 및 입양아로서 출생아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출산장려금의 지원액) 출산 장려금 지원액은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그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출산장려금의 지원액) 출산 장려금은 출생아(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각각 지원하되 주민등록에 등재된 순서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현 행	개 정 안
<p>1. 첫째와 둘째 출생아는 출생 신고 다음달 말까지 60만원을 지급하고 출생한 달부터 7개월 째 되는 달에 관내에 계속 거 주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다 음달 말일까지 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p>	<p>1. 첫째와 둘째 출생아는 총 220 만원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분 할하여 지급한다.</p> <p>가. 축하금 : 출산장려금 신청 다음 달 말까지 100만원을 지급</p> <p>나. 양육지원금 : 출생 후 7개 월째 되는 달 말일과 13개 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각 각 60만원 지급(다만, 출생 후 6개월과 12개월째 되는 달에 관내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p>
<p>2. 셋째 출생아 이상은 출생한 해부터 3년간 년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지급한다.</p> <p>&lt;신 설&gt;</p>	<p>2. 셋째 출생아 이상은 총 1,000 만원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분 할하여 지급한다.</p> <p>가. 축하금 : 출산장려금 신청 다음 달 말까지 300만원 지급</p> <p>나. 양육지원금 : 12개월째 되 는 달 말까지 300만원, 24 개월째 되는 달 말까지 20 0만원, 36개월째 되는 달 말까지 200만원 지급(다만,</p>

현 행	개 정 안
	<p><u>지급하는 달 현재까지 관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u></p>
제7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장 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이 조례 제3조제2항의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서류 <u>가. 사망 또는 혼인 ·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행정전산망자료의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담 당 공무원의 조회로 같음 한다.</u>	<p>제7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u>가. 사망 또는 혼인 ·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행정 전산망 자료의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행 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서를 제출 받아 담당 공무 원의 조회로 같음한다.</u></p>
나. (생 략) 3. (생 략) ③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92호

진안군보

2016. 5. 16(월)

진안군의회 의결을 얻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직무대리 부군수 이근수



2016 5월 16일

진안군 조례 제2220호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마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주민생활지원과
- 바. 민원봉사과
- 사. 문화체육과
- 아. 재무과
- 자. 행정지원과
- 차. 보건소
- 카. 읍·면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업건설위원회
  - 가. 전략산업과
  - 나. 친환경농업과
  - 다. 환경산림과
  - 라. 건설교통과

제492호

진 안 군 보

2016. 5. 16(월)

- 마. 안전재난과
- 바. 농업기술센터
- 사. 관광개발사업소
- 아. 맑은물사업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조례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 ② (생 략)</p> <p>1. (생 략)</p> <p>가. ~ 라. (생 략)</p> <p><u>마. 민원봉사과</u></p> <p><u>바. 문화체육과</u></p> <p><u>사. 재무과</u></p> <p><u>아. 행정지원과</u></p> <p><u>자. 맑은물사업소</u></p> <p><u>차. 읍·면</u></p> <p><u>카. &lt;신 설&gt;</u></p> <p>2. 산업복지위원회</p> <p><u>가. 주민생활지원과</u></p> <p><u>나. 전략산업과</u></p> <p><u>다. 친환경농업과</u></p> <p><u>라. 환경산림과</u></p> <p><u>마. 건설교통과</u></p> <p><u>바. 안전재난과</u></p> <p><u>사. 보건소</u></p> <p><u>아. 농업기술센터</u></p> <p><u>자. 관광개발사업소</u></p>	<p>제1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u>마. 주민생활지원과</u></p> <p><u>바. 민원봉사과</u></p> <p><u>사. 문화체육과</u></p> <p><u>아. 재무과</u></p> <p><u>자. 행정지원과</u></p> <p><u>차. 보건소</u></p> <p><u>카. 읍·면</u></p> <p>2. 산업건설위원회</p> <p><u>가. 전략산업과</u></p> <p><u>나. 친환경농업과</u></p> <p><u>다. 환경산림과</u></p> <p><u>라. 건설교통과</u></p> <p><u>마. 안전재난과</u></p> <p><u>바. 농업기술센터</u></p> <p><u>사. 관광개발사업소</u></p> <p><u>아. 맑은물사업소</u></p>

진안군 고시 제2016 - 41호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주천면 주양지구]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일  
진안군수

1. 지적측량대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
2. 지구명: 주천면 주양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위치: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437-3번지 일원
  - 규모: 702필지, 833,657㎡
4. 대행업무: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5. 문의사항: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63-430-2264)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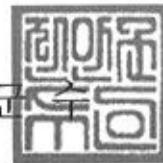


【진안군 고시 제 2016 - 46 호】

지적기준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05월 11일

진안군



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m)	경위도	
	X(m)	Y(m)		경도 (L)	위도 (B)
지적도근점 320외 51점	불	임		참	조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소재지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246-1 외				
설치일자	2016년 04월 11일				
표지의제결	철제				
측량성과보관장소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비고	설치(불임조서참조)				

## 지적측량기준점성과조사서

번호	기준점의 명칭	번호	지역축자리(m)		세계축자리(m)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설지일자	소재지	표지체형	비고
			중변좌표(X)	횡변좌표(Y)	중선좌표(D)	횡선좌표(V)						
1	지적도근점	320	247156.040	234112.550	347463.530	234185.310	281.624	35-43-25.65525	2016.04.11.	마령면 평지리 1246-1	봉	죽령설악 보관장소 진인군청 단원봉사 단
2	지적도근점	338	246987.000	234245.140	347294.500	234317.900	282.862	35-43-20.15420	2016.04.11.	마령면 평지리 1246-8	풀자	
3	지적도근점	345	246724.720	234316.910	347032.210	234389.670	282.848	35-43-11.65540	2016.04.11.	마령면 평지리 1246-14	풀자	
4	지적도근점	432	246032.200	231985.120	346339.650	232057.880	278.817	35-43-54.33874	2016.04.11.	마령면 계서리 1567-1	풀자	
5	지적도근점	500	248470.440	233247.050	346777.910	233319.840	274.321	35-44-08.40715	2016.04.11.	마령면 평지리 1556-1	풀자	
6	지적도근점	501	248513.450	233416.260	346820.920	233489.000	275.455	35-44-09.78216	2016.04.11.	마령면 평지리 511-5	풀자	
7	지적도근점	503	248568.640	233584.390	346877.110	233657.140	277.890	35-44-11.55212	2016.04.11.	마령면 평지리 1439	풀자	
8	지적도근점	1324	253667.080	241956.920	353974.620	242029.550	307.087	35-46-55.81313	2016.04.11.	진안읍 물곡리 1147-1	풀자	
9	지적도근점	1325	253563.840	242032.530	353871.380	242105.160	205.540	35-46-52.45189	2016.04.11.	진안읍 물곡리 1245-1	풀자	
10	지적도근점	1433	264129.300	237783.390	364436.720	237855.920	281.901	35-52-35.86996	2016.04.11.	진현면 용파리 725-23	풀자	
11	지적도근점	1436	264023.850	237705.700	364331.280	237778.230	292.957	35-52-32.45059	2016.04.11.	정현면 용파리 1283-14	풀자	
12	지적도근점	1564	255248.790	241253.750	355556.320	241326.360	285.565	35-47-47.23777	2016.04.11.	진안읍 물곡리 414-2	풀자	
13	지적도근점	1567	255493.070	241023.890	355800.590	241096.500	283.676	35-47-55.19783	2016.04.11.	진안읍 물곡리 445-1	풀자	
14	지적도근점	1846	248066.520	233146.940	346373.990	233219.690	273.168	35-43-55.31429	2016.04.11.	마령면 평지리 925-1	풀자	

번호	기준점의 명칭	번호	지역축자체(m)	세계축자체(m)	표 고 (도-분-초) (m)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설치일자	소재지	표지대체	비 고	설정과 보관장소	
15	지적도근점	1873	247033.300	226359.560	347340.690	226432.360	240.298	35-43-22.52842	127-17-31.70698	2016.04.11.	설수면 용포리 506-1	설자	
16	지적도근점	1874	247295.290	226277.190	347602.680	226349.990	244.179	35-43-31.03664	127-17-28.46061	2016.04.11.	설수면 용포리 551	설자	
17	지적도근점	2461	257655.280	241899.740	357962.800	241972.320	273.893	35-49-05.21591	127-27-52.00811	2016.04.11.	진안읍 운선리 신20-2	설자	
18	지적도근점	2462	257519.640	241744.360	357827.160	241816.950	271.262	35-49-00.83908	127-27-45.79342	2016.04.11.	진안읍 운선리 81-2	설자	
19	지적도근점	2562	271537.720	246234.280	371845.200	246306.660	275.643	35-56-34.91182	127-30-47.56813	2016.04.11.	용암면 월계리 423-56	설자	
20	지적도근점	2613	272537.480	247079.830	372844.960	247152.200	216.617	35-57-07.20193	127-31-21.51608	2016.04.11.	용암면 송동리 1220-2	설자	
21	지적도근점	2644	272287.500	247074.050	372594.990	247146.420	218.908	35-56-59.09298	127-31-21.23222	2016.04.11.	용암면 송동리 1168-2	설자	
22	지적도근점	2667	255209.520	241328.600	355517.050	241401.220	205.292	35-47-45.95239	127-27-48.80266	2016.04.11.	진안읍 월곡리 414-20	설자	
23	지적도근점	2944	259008.480	245988.350	355316.040	246060.880	277.838	35-49-48.46072	127-30-35.15532	2016.04.11.	상천면 수동리 263-13	설자	
24	지적도근점	2945	259061.190	245944.460	355368.750	246017.000	275.188	35-49-50.17632	127-30-33.41755	2016.04.11.	상천면 수동리 263-22	설자	
25	지적도근점	2984	250318.390	227533.850	350625.780	227606.610	265.235	35-45-05.99338	127-18-18.83480	2016.04.11.	설수면 송길리 981-7	설자	
26	지적도근점	3087	260694.650	236557.640	361002.080	236630.220	297.602	35-50-44.59397	127-24-19.70719	2016.04.11.	부구면 주남리 477-1	설자	
27	지적도근점	3129	264009.290	234254.200	364316.670	234326.750	355.452	35-52-32.43398	127-22-48.42945	2016.04.11.	부구면 월금리 673-4	설자	
28	지적도근점	3130	264132.500	234154.740	364439.880	234227.290	357.300	35-52-36.44399	127-22-44.48363	2016.04.11.	부구면 월금리 699-7	설자	
29	지적도근점	3458	249116.500	230260.370	349423.930	230333.120	262.267	35-44-29.71517	127-20-07.19393	2016.04.11.	마령면 강정리 705-7	설자	

번호	기준점의 명칭	번호	지역을지정(m)	세계축지점(m)	표고 (m)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설치일자	소재지	표지판	비고
30	지적도근점	3566	255434.130	240898.060	355741.650	240970.680	280.718	35-47-53.30430	127-27-11.69836	2016.04.11.	진안읍 풍곡리 685-3
31	지적도근점	3618	260605.200	236428.620	360912.630	236501.200	286.280	35-50-44.70912	127-24-14.55121	2016.04.11.	부귀면 두남리 695
32	지적도근점	3620	260858.570	236001.950	361166.000	236074.530	300.701	35-50-49.98629	127-23-57.58996	2016.04.11.	부귀면 두남리 880
33	지적도근점	3637	262060.840	235878.000	362368.250	235950.570	327.033	35-51-29.09096	127-23-52.84504	2016.04.11.	부귀면 황금리 366-1
34	지적도근점	3638	261936.420	235763.760	362243.830	235836.320	321.987	35-51-24.98747	127-23-48.27185	2016.04.11.	부귀면 황금리 423-4
35	지적도근점	3920	263865.090	234269.130	364172.470	234341.690	350.483	35-52-27.75363	127-22-49.00266	2016.04.11.	부귀면 황금리 676-20
36	지적도근점	4233	247947.890	233132.440	348255.360	233205.190	274.534	35-43-51.46701	127-22-01.32004	2016.04.11.	마령면 향자리 909-9
37	지적도근점	4238	248274.970	233384.220	348582.450	233456.970	274.653	35-44-02.04661	127-22-11.38792	2016.04.11.	마령면 향자리 982-5
38	지적도근점	4321	271630.930	246204.010	371938.410	246276.400	272.649	35-56-37.94096	127-30-46.36017	2016.04.11.	용답면 물개리 421-5
39	지적도근점	4953	248652.110	233110.370	348959.570	233183.120	273.165	35-44-14.31801	127-22-00.54554	2016.04.11.	마령면 갈령리 38-1
40	지적도근점	4973	262231.160	235875.280	362538.580	235947.850	332.590	35-51-34.53559	127-23-22.76442	2016.04.11.	부귀면 물개리 370-8
41	지적도근점	5513	259875.340	232880.480	360182.730	232953.050	319.648	35-50-18.47998	127-21-53.05538	2016.04.11.	부귀면 거석리 747-2
42	지적도근점	5514	259977.760	232811.090	360285.150	232883.700	321.716	35-50-21.81145	127-21-50.30548	2016.04.11.	부귀면 거석리 773-3
43	지적도근점	5515	260068.010	232718.710	360395.390	232791.320	325.537	35-50-25.39936	127-21-46.64080	2016.04.11.	부귀면 거석리 435-1
44	지적도근점	5516	259998.970	233067.490	360306.360	233140.100	318.002	35-50-22.46664	127-22-40.52514	2016.04.11.	부귀면 거석리 491

번호	기준점의 명칭	번호	지역별지점(m)	체계별지점(m)	표고 (m)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설치일자	소재지	표지판형	비고	
45	지적도근점	5517	240591.620	232932.230	3488699.080	233004.980	271.050	35-44-12.37690	127-21-53.44862	2016.04.11.	마령면 강정리 124-3	설재
46	지적도근점	5518	257082.040	238786.200	357389.520	238858.820	378.448	35-48-47.07760	127-25-47.08163	2016.04.11.	진안읍 운산리 1827	설재
47	지적도근점	5519	257191.630	238791.500	357499.110	238864.110	383.389	35-48-50.63260	127-25-48.11147	2016.04.11.	진안읍 운산리 산139-4	설재
48	지적도근점	5520	237030.170	241349.570	337337.790	241422.420	628.333	35-37-56.12442	127-27-26.27393	2016.04.11.	백운면 신영리 27	설재
49	지적도근점	5521	237133.820	241415.720	337441.440	241488.560	625.536	35-37-59.47755	127-27-28.92188	2016.04.11.	백운면 신암리 19	설재
50	지적도근점	5522	237246.860	241420.320	337554.480	241493.170	619.619	35-38-03.14433	127-27-29.12568	2016.04.11.	백운면 신암리 46	설재
51	지적도근점	5523	235753.090	242128.740	336060.700	242201.610	1147.497	35-37-14.57021	127-27-57.00037	2016.04.11.	백운면 신암리 산1-11	설재
52	지적도근점	5524	235757.610	242151.360	336065.220	242224.230	1145.727	35-37-14.71344	127-27-57.90012	2016.04.11.	백운면 신암리 산1-11	설재
				01	01	04	04					